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환 경 영 향 평 가
(평 가 항 목 · 범 위 등 의 결 정 내 용)

2021. 12



국 토 교 통 부

제 1 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국가 국정과제(베어링산업 육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인 첨단 베어링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베어링 산업 직접화 도모
- 경상북도 북부권에 전무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낙후지역 개발로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첨단베어링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4차 산업(자동차, 기차, 로봇, 우주항공 등)의 핵심 기반산업의 육성하여 국산화에 기여하고자 함
- 따라서 국가정책 현실화와 지역의 고용창출, 인구증가, 세수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함

1.2 사업내용

1.2.1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사업지구의 면적은 1,362,801㎡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사업면적이 15만㎡ 이상인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임
-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행정절차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거 실시함

〈표 1.2.1-1〉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환경영향평가법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인 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또는 제39조의 7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예정부지 면적 1. 15만㎡ 미만 : 전략환경영향평가 2. 15만㎡ 이상 : 환경영향평가	산업단지계획 승인전

1.2.2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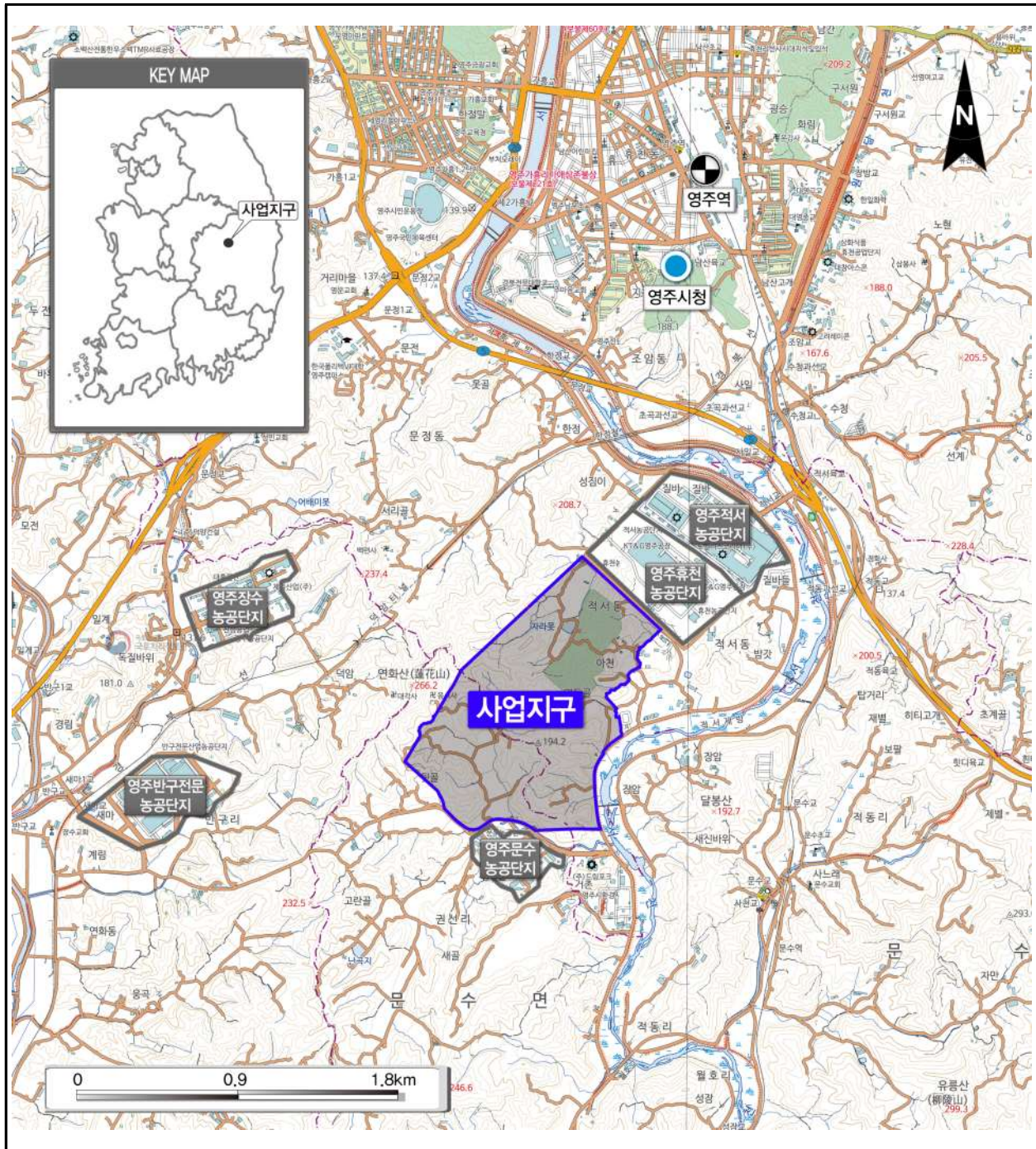
- 2017. 07. :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지역공약 선정
- 2018. 08. :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확정(국토교통부)
- 2019. 03. : 기본업무협약 체결(경상북도-영주시-경상북도개발공사)
- 2019. 03.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경상북도 고시 제2019-498호)
- 2020. 10. :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통과(지방공기업평가원)
- 2021. 03. : 사업실시협약 체결(경상북도-영주시-경상북도개발공사)
- 2021. 08. : 조사설계용역 착수
- 2021. 09. : 환경영향평가용역 계약 및 착수

1.2.3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적서동 일원
- 사업규모 : 1,362,801㎡
- 총사업비 : 316,500백만원
-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개발공사
- 사업기간 : 2021년 ~ 2026년
-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 협의기관 : 환경부
- 사업유형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표 1.2.3-1〉 유치업종계획

구 분		세부유치업종	비고
합 계			
베어링 관련 제조업	C24	1차금속	
	C25	금속가공제품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C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비제조업	H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그림 1.2.3-1) 사업지구 위치도

제 2 장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2.1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1항 [별표1],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2017-215호」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 등에 준하여 항목을 설정하였음

2.1.1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표 2.1.1-1〉 환경영향평가 항목선정

구 분	평가항목 선정
중점평가항목(14개)	○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질, 수리·수문,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생 및 공중보건, 위락·경관
일반평가항목(3개)	○ 인구 및 주거, 산업, 전파장해
제외항목(2개)	○ 해양환경, 일조장해

〈표 2.1.1-2〉 항목별 선정사유

분야	평가항목	결정결과	선정(제외) 사유
자연 환경 분야	동·식물상	중점평가 항목	○ 사업시행으로 인한 야생 생물 영향검토 ○ 지구 내 임상지역에 대한 식생보전등급 판정 및 영향검토
	자연환경자산	중점평가 항목	○ 기존문헌 및 현황조사를 시행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검토
대기 환경 분야	기 상	중점평가 항목	○ 대기질, 악취, 건강영향평가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중점평가 항목	○ 공사시 투입장비 및 토공량에 따른 대기질 영향검토 ○ 운영시 산업시설의 연료사용계획 검토 ○ 입지특성 및 생산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영향범위 내 대기확산 모델을 이용한 영향예측
	악 취	중점평가 항목	○ 운영시 산업시설 가동에 의한 악취 영향 예측
	온실가스	중점평가 항목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 ○ 운영시 난방·취사용 연료사용, 산업시설에서의 연료사용 및 차량 통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

〈표 2.1.1-2 계속〉 항목별 선정사유

분야	평가항목	결정결과	선정(제외) 사유
수 환경 분야	수 질 (지표·지하)	중점평가 항목	○ 공사시 토사유출 및 운영시 비점오염으로 인한 주변수계영향 검토 ○ 운영시 오·폐수처리계획 검토
	수리·수문	중점평가 항목	○ 공사시 토사유출 및 운영시 재해(홍수 등) 영향 검토
	해양환경	제외항목	○ 사업시행과 연관 없음
토지 환경 분야	토지이용	중점평가 항목	○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자연친화적인 토지이용 변화 유도
	토 양	중점평가 항목	○ 사업지구내 지장물에 따른 토양오염 개연성 여부 검토 ○ 공사시 비옥토 활용방안 및 운영시 토양오염방지계획 수립
	지형·지질	중점평가 항목	○ 보전가치 있는 지형·지질 훼손 여부 검토 ○ 부지정지시 절·성토에 따른 사면 및 토공발생, 비옥토 유실 영향 검토
생활 환경 분야	친환경적 자원순환	중점평가 항목	○ 공사시 건설폐기물 및 임목폐기물 발생량 검토 ○ 운영시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계획 검토
	소음·진동	중점평가 항목	○ 공사시 공사장비, 토사 운반로, 공사차량 진·출입로 및 그 주변 정온시설의 소음·진동영향 검토 ○ 운영시 공장소음 및 도로교통에 의한 주변지역 소음영향 검토
	위락·경관	중점평가 항목	○ 사업시행에 따른 자연의 훼손 및 기존 시설과 자연지형에 어울리는 경관계획 수립 유도
	위생 및 공중보건	중점평가 항목	○ 사업시행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검토
	전파장해	일반평가 항목	○ 변전소 운영시 영향검토
	일조장해	제외항목	○ 사업시행과 연관 없음
사회 경제 환경	인구 및 주거	일반평가 항목	○ 통계자료를 통한 사업지역의 인구현황 파악
	산 업	일반평가 항목	○ 통계자료 및 문헌자료를 통한 산업현황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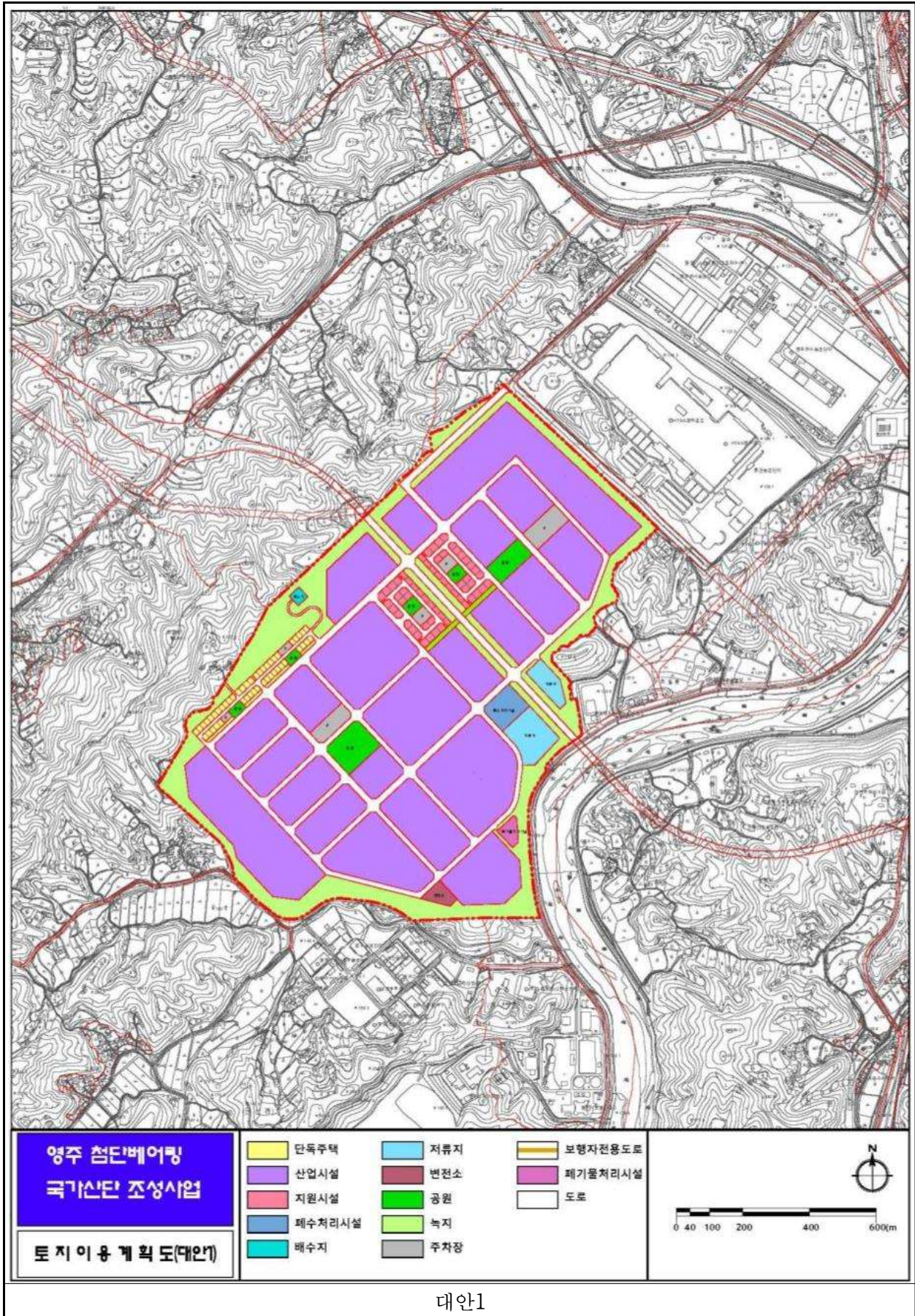
2.1.2 대안의 비교·검토

- 본 산업단지 계획시 토지이용계획(대안1)에 대하여, 사업예정지 인근 주거지역 등 정온시설 현황 파악후, 이를 고려한 사업여건 변화 및 개발목표를 고려하여 대안(대안2)를 수립하였음

〈표 2.1.2-1〉 대안별 토지이용계획

구 분		대안1		대안2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합계		1,362,801	100.0	1,462,041	100.0	-
단독주택		14,324	1.1	11,927	0.8	-
산업시설		787,771	57.8	823,043	56.3	-
지원시설		27,680	2.0	57,721	3.9	-
공공 시설 용지	소계	533,026	39.1	569,350	39.0	-
	도로	187,880	13.8	226,013	15.5	-
	주차장	20,560	1.5	11,052	0.8	-
	공원	29,513	2.2	47,514	3.2	-
	연결녹지	3,960	0.3	239,275	16.4	-
	완충녹지	246,877	18.1			-
	보행자도로	450	0.0	1,365	0.1	-
	폐수처리시설	10,134	0.7	7,522	0.5	-
	폐기물처리시설	3,524	0.3	-	-	-
	저류지	24,162	1.8	29,351	2.0	-
	배수지	1,600	0.1	1,020	0.1	-
	변전소	4,366	0.3	6,238	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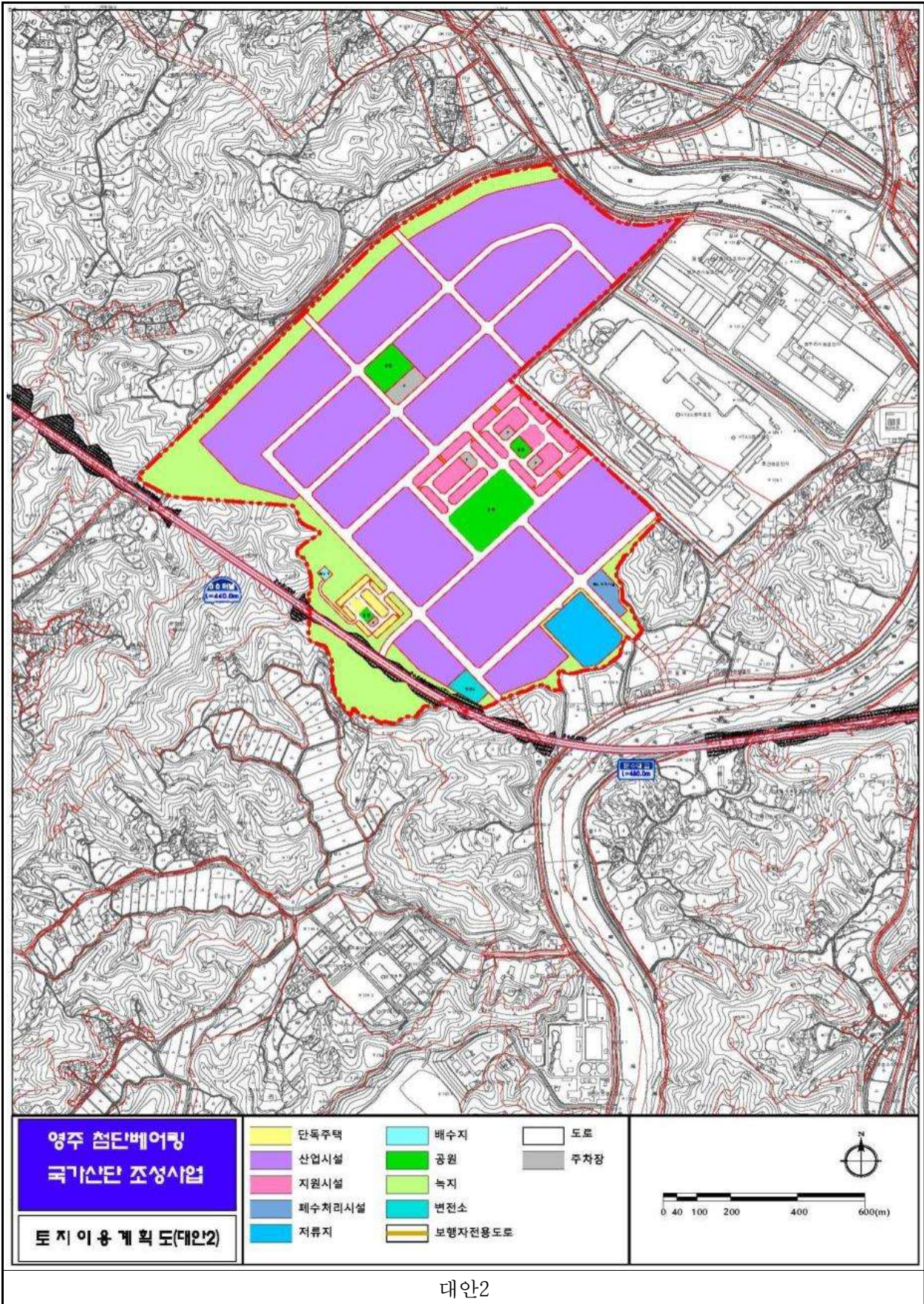
주) 상기 토지이용계획은 평가항목·결정 등에 의하여 마련한 개략적인 대안으로서 향후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시 변경될 수 있음



대안1

주) 상기 토지이용계획(안)은 본 평가항목범위 결정내용 반영,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그림 2.1.2-1) 대안별 토지이용계획도(대안1)



주) 상기 토지이용계획(안)은 본 평가항목범위 결정내용 반영,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그림 2.1.2-2) 대안별 토지이용계획도(대안2)

〈표 2.1.2-2〉 대안의 설정 및 분석

구분		대안1	대안2
토지 이용	계	1,362,801㎡	1,462,041㎡
	주거용지	14,324㎡ (1.1%)	11,927㎡ (0.8%)
	산업용지	787,771㎡ (57.8%)	823,043㎡ (56.3%)
	지원시설	27,680㎡ (2.0%)	57,721㎡ (3.9%)
	공공시설	533,026㎡ (39.1%)	569,350㎡ (39.0%)
공원·녹지율		280,350㎡ (20.6%)	286,789㎡ (19.6%)
가처분용지		858,225㎡ (63.0%)	903,743㎡ (61.8%)
장점		•단독주택과 산업용지 분리를 통해 공해 및 일조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지원시설용지 권역별 배치를 통해 종사자 및 방문자 접근성 향상 및 입지배분의 균등 분배 도모 •통과교통 배제를 통해 내부 절·성 토량 배분에 유리	•사업대상지 중심에 공원을 배치하여 종사자 및 방문자 이용에 효율성 도모 •북측 현황도로를 활용하여 내부 접근에 유리
단점		•주변도로 진입로 상대적으로 적음(대상지 내부 관통하는 외곽순환도로 1개소, 북동측 대로2류-적서공단로 1개소 예상)	•북측지역의 높은 표고 및 경사 등으로 인해 토지공사비 및 토지이용계획고 조성에 불합리 발생 예상
선정안		○	
종합평가		•대안1과 대안2에 대한 평가결과 가처분용지의 경우 대안1과 대안2가 비슷한 수준이며, 공사비 절감 부문에 있어 대안1이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됨 •진입로의 경우 대안2이 유리하나, 설계 검토 시 북측 표고 및 경사 차이로 진입로 확보 불합리 발생 예상되어, 토공량 증가 및 산지의 훼손이 가중됨 •따라서 대안1을 타당성 검토 대상으로 설정	

2.1.3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환경영향평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20-289호」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대기질, 악취, 소음·진동, 2013.01, 환경부)에 의거 대상지역을 설정하였으며, 선정한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평가범위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 반영)

〈표 2.1.3-1〉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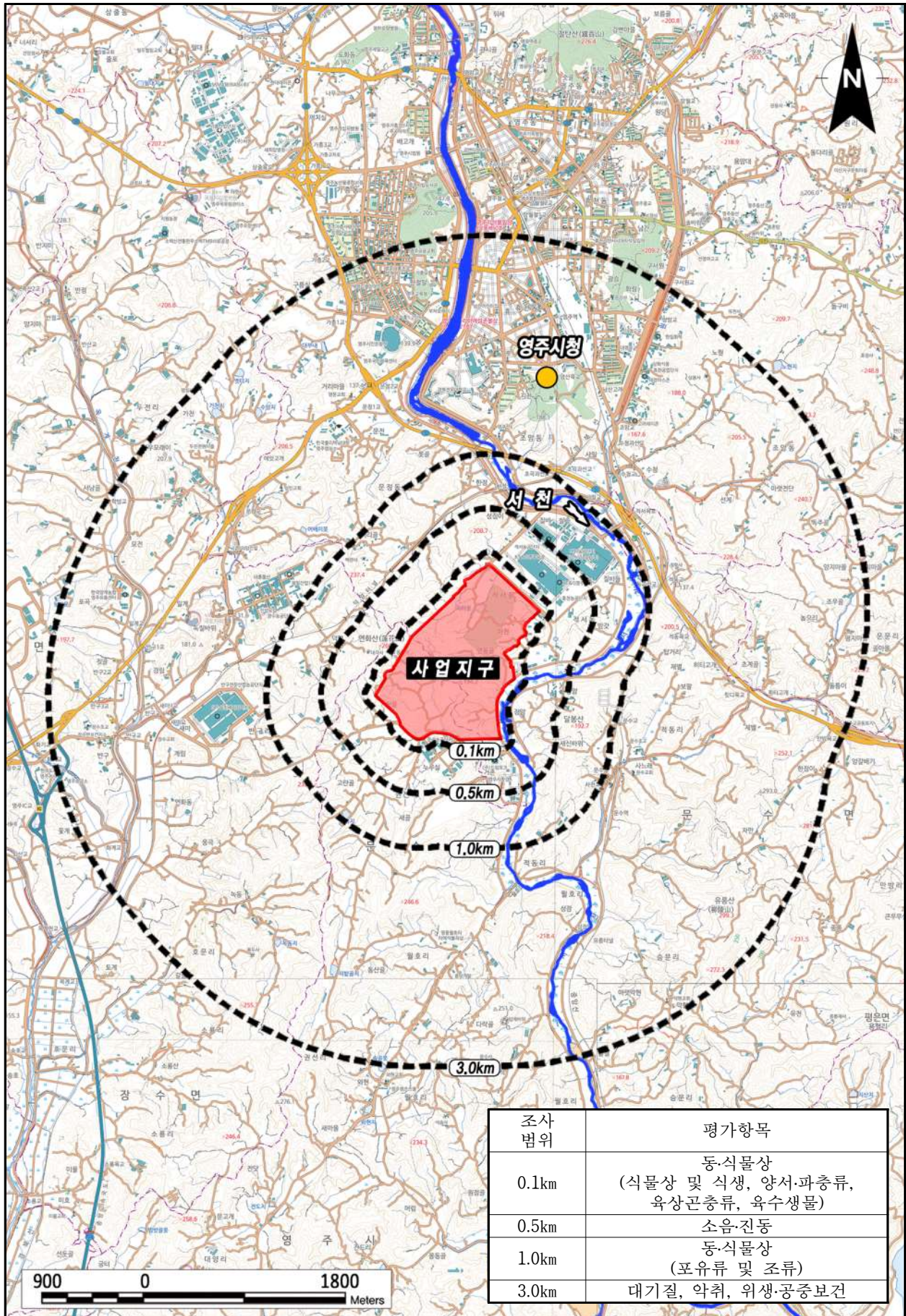
평가항목		평가범위·방법		선정사유
		지역(범위)	방 법	
자연생태환경	동·식물상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지구경계로부터 분류군별 0.1~1.0km	○ 현지조사(탐문조사 포함) ○ 문헌조사 ○ 영향예측 - 사업계획내용 분석	○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및 그 서식환경을 파악하여 사업시행으로 이들 보호 대상에 미치는 영향과 범위를 종합적으로 예측
	자연경관자산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는 지역 포함)	○ 현지조사 ○ 문헌조사 ○ 영향예측 - 사업계획내용 분석	○ 기존 문헌조사 및 현지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현황파악을 실시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분석
대기환경	기상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충주기상대 (최근10년 자료분석) ○ 현지조사 - 부지기상 : 1지점, 1년간 자동 측정 - 상층기상 : 1지점×4회(3일 측정)	○ 사업지구 인근 기상대 및 AWS 자료 분석을 통해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지구경계로부터 3.0km	○ 현지조사 : 7개 지점×4회(3일 측정) ○ 문헌조사 ○ 영향예측 - 대기확산모델링	○ 공사시 공사장비 및 토공작업에 의한 영향예측 ○ 운영시 산업시설 가동에 따른 연료사용 및 차량 배기가스, 주변 지역의 대기오염도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악취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지구경계로부터 3.0km	○ 현지조사 : 7개 지점×4회 ○ 문헌조사 ○ 영향예측 - 대기확산모델링	○ 사업지구 내 유치업종에 따른 악취영향 검토

〈표 2.1.3-1 계속〉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평가항목		평가범위·방법		선정사유
		지역(범위)	방 법	
대기 환경	온 실 가 스	○ 사업지구	○ 대상사업의 계획내용, 기존 연구 문헌 등을 참고	○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이 용시설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수 환경	수 질 (지표 · 지하)	○ 사업지구 및 인근수계 영향권 - 서천 등	○ 현지조사 - 지표수질 : 5개 지점×4회 - 지하수질 : 3개 지점×4회 ○ 문헌조사	○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예상 ○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발생 ○ 운영시 오·폐수 발생 및 비점 오염원 발생 영향
			○ 영향예측 - 토사유출량 산정 - 오·폐수발생량 산정 - 사업계획내용 분석 - 하류수계에 미치는 영향분석	
	수 리 · 수 문	○ 사업지구 및 인근수계(서천 등) 영향권	○ 현지조사 ○ 문헌조사	○ 사업시행 전·후에 따른 수리 · 수문의 변화 파악
			○ 영향예측 - 유황변화 분석 - 우수유출량 변화 분석	
토지 환경	토 지 이 용	○ 사업지구	○ 현지조사 ○ 문헌조사	○ 사업시행 전·후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파악
			○ 영향예측 - 사업계획내용 분석	
	토 양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현지조사 : 3개 지점×4회 ○ 문헌자료 병행	○ 사업지구내 토양오염 현황파악 ○ 공사시 및 운영시 토양오염 유발 요인 파악
			○ 영향예측 - 사업계획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배출여부 파악	
	지 형 · 지 질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현지조사 ○ 문헌조사	○ 절·성토에 의한 지형 변화 ○ 토사유출, 비옥토 유출, 사면 발생 등 검토
			○ 영향예측 - 사업계획내용 분석	

〈표 2.1.3-1 계속〉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평가항목		결 정 결 과		선정사유
		지역(범위)	방법	
생활 환경	친 환 경 적 자 원 순 환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현지조사 ○ 사업계획내용 분석 ○ 영향예측 - 폐기물통계조사 원단위 적용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등 처리대책 수립
	소 음 · 진 동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지구경계로부터 0.5km	○ 현지조사 - 소음·진동 : 7개 지점×4회 ○ 영향예측 -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예측 - 사업계획내용 분석	○ 공사시 공사장비, 토사 운반로, 공사 차량 진·출입로 및 그 주변에 대한 소음·진동 영향예측 ○ 운영시 산업시설 가동소음에 따른 주변지역 소음 영향예측
	위 락 · 경 관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영향권	○ 현지조사 ○ 문헌조사 ○ 영향예측 - 경관변화 예측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위락· 경관요소 파악 ○ 조망점별 경관변화 예측
	위 생 및 공 중 보 건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지구경계로부터 3.0km	○ 현지조사 : 5개 지점×4회 ○ 문헌조사 ○ 사업계획 관련 자료 ○ 영향예측 - 대상사업의 계획내용, 기존 연구문헌 등 참고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의 발생
	전 과 장 해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 영향예측 - 사업계획내용 분석	○ 사업시행에 따른 전자파의 자기장에 의한 노출영향 검토
	인 구 및 주 거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 영향예측 - 사업계획내용 분석	○ 공사시 및 운영시 인구의 변화
사회 경제 환경	산 업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 영향예측 - 사업계획내용 분석	○ 사업시행으로 인한 산업활동 변화



(그림 2.1.3-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범위 설정도

2.1.4 환경현황 조사계획

-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구내 및 주변에 인구밀집 주거지역,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환경질(대기질, 악취, 수질(지표, 지하), 토양, 소음·진동, 건강영향평가) 측정지점을 4방위의 대표지점이 포함되도록 선정하였음
- 동·식물상은 출현 및 생육 등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1km이내)을 조사하고 조사시기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2020-289호」 내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조사방법 및 조사항목을 참고하여 분류군별(조류:겨울 포함, 그 외 분류군은 계절별 실시) 조사를 계획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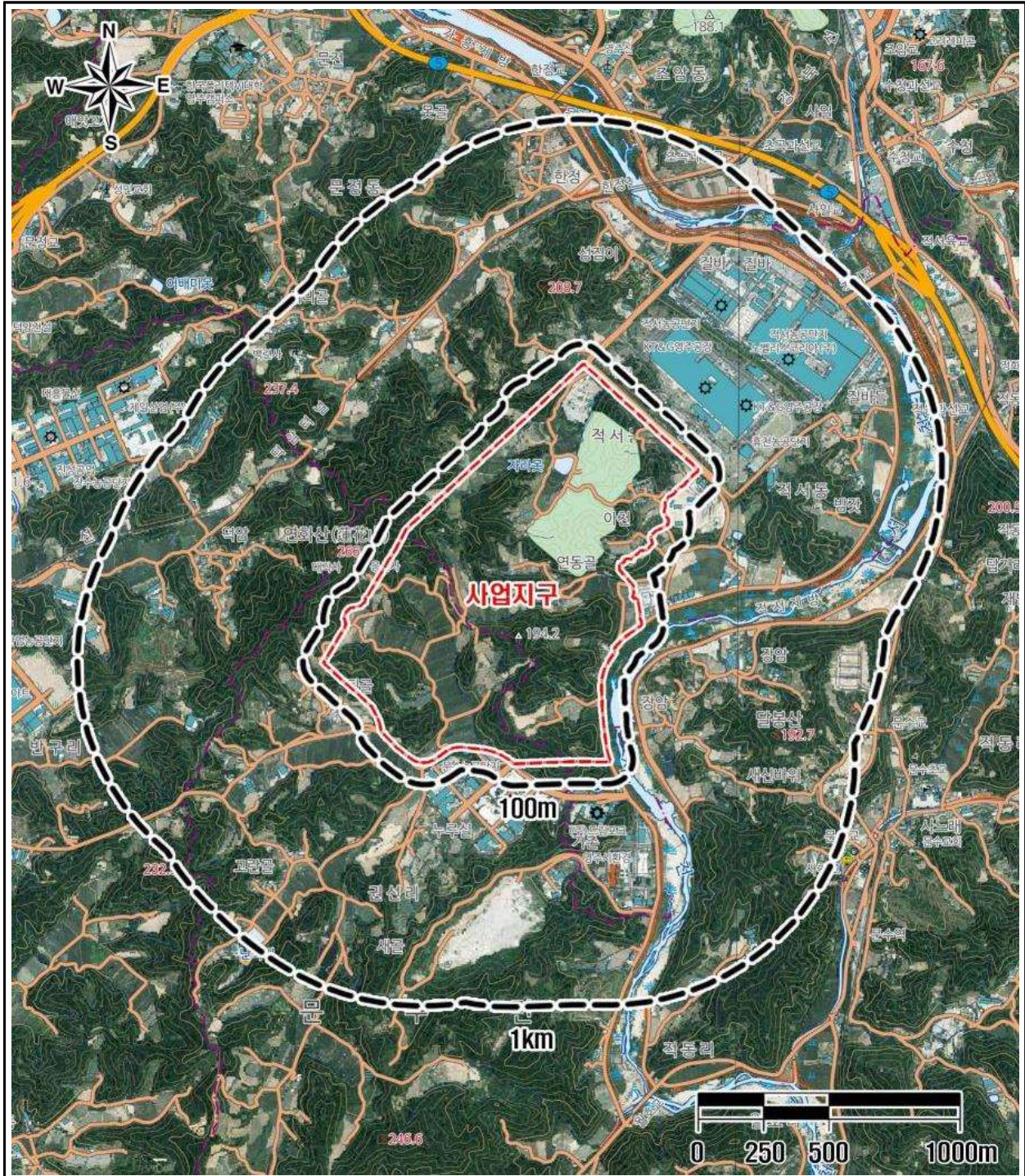
〈표 2.1.4-1〉 동·식물상 및 환경질 조사항목 선정

항 목		조사항목 및 조사시기		조사범위
자연생태 환경분야	식물상 및 식생	조사항목	○ 식물상 - 관속식물의 분포현황 - 보호수 및 노거수 - 한반도 고유종 및 희귀식물 - 식물구계학적특정식물 - 법정보호종 - 귀화식물 및 생태계교란생물 ○ 식생 - 주요식생의 분포현황 - 현존식생도 및 식생보전등급 평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지구경계로 부터 0.1~1km)
		조사시기	○ 4회 조사(계절별)	
	포유류	조사항목	○ 각 분류군별 분류 현황 ○ 법정보호종 서식현황 ○ 생태계교란생물 서식현황	
		조사시기	○ 4회 조사(계절별)	
	조류	조사항목	○ 각 분류군별 분류 현황 및 군집분석 ○ 법정보호종 서식현황	
		조사시기	○ 4회 조사(계절별) ※ 월동조류(겨울철새) : 11~2월 ※ 번식조류(텃새, 여름철새) : 4~7월	
	양서·파충류	조사항목	○ 각 분류군별 분류 현황 ○ 법정보호종 서식현황 ○ 생태계교란생물 서식현황	
		조사시기	○ 4회 조사(계절별)	
	육상곤충	조사항목	○ 각 분류군별 분류 현황 ○ 법정보호종 서식현황 ○ 생태계교란생물 서식현황	
		조사시기	○ 4회 조사(계절별)	

〈표 2.1.4-1 계속〉 동·식물상 및 환경질 조사항목 선정

항 목		조사항목 및 조사시기		조사범위
자연생태 환경분야	어류 및 저서성대형 무척추동물, 부착조류	조사항목	○ 각 분류군별 분류 현황 및 군집분석 ○ 생물학적 수질평가 -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생태점수(ESB) ○ 법정보호종 서식현황 ○ 생태계교란생물 서식현황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지구경계 로부터 0.1~1.0km)
		조사시기	○ 4회 조사(계절별)	

주) 조사지점은 현지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그림 2.1.4-1) 동·식물상 조사지점도

〈표 2.1.4-2〉 환경질 조사항목 선정

항 목		조사항목	지점수	조사회수
대기환경 분야	대기질	○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NO ₂ , SO ₂ , CO, O ₃ , Pb, 벤젠(3일 측정)	7개소	4회 (계절별)
	악취	○ 복합악취	7개소	4회 (계절별)
수환경 분야	지표수질	○ pH, BOD, COD, DO, SS,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T-N, T-P, Cd, As, CN, Hg, 유기인, PCB, Pb, Cr ⁺⁶ , ABS, TOC	5개소	4회 (계절별)
	지하수질	○ pH,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KMnO ₄ 소비량, NH ₃ -N, Cd, SO ₄ ⁻² , 경도, 탁도, 색도, 증발잔류물, As, CN, Hg, Pb, Cr ⁺⁶ , Cl ⁻ , NO ₃ -N, Cu, Zn, F, Fe, 페놀	3개소	4회 (계절별)
토지환경 분야	토 양	○ Cd, Cu, As, Hg, Pb, Cr ⁶⁺ , Zn, Ni, F, 유기인화합물, PCB, CN, 페놀, BTEX,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3개소	4회 (계절별)
생활환경 분야	소음·진동	○ 소음(환경기준), 진동(환경기준)	7개소	4회 (계절별)
	위생 및 공중보건	○ As, Ni, Cd, Hg, Cr ⁺⁶ , HCHO, 스티렌, 염화비닐,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벤젠	7개소	4회 (계절별)
생태계		○ 육상식물상, 육상동물상, 육수생물상	계절별(4회)	

〈표 2.1.4-3〉 항목별 조사지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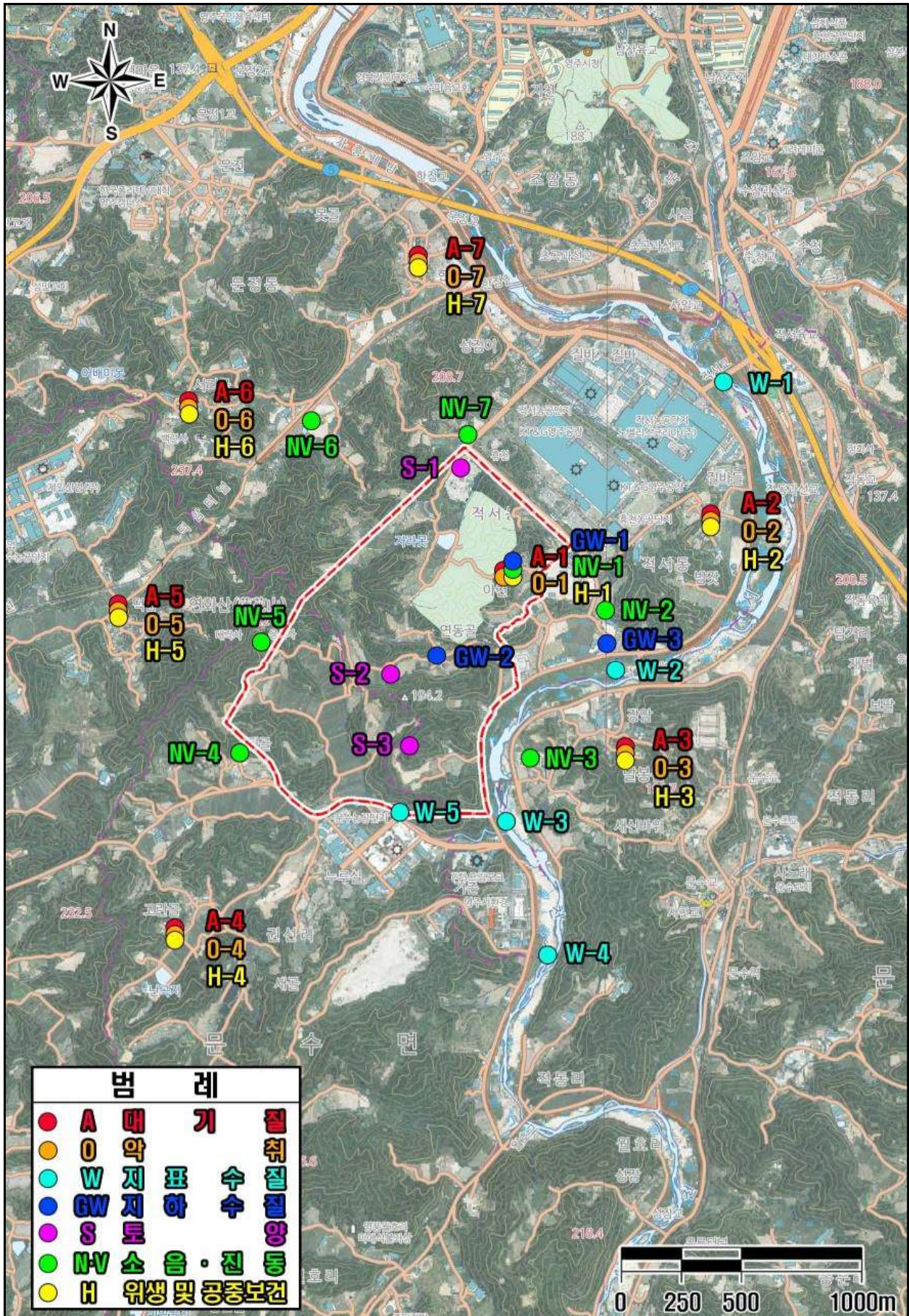
항 목	조사지점		비고
대기질	A-1	경상북도 영주시 적서로261번길 65 (아천경로당)	-
	A-2	경상북도 영주시 적서로 351-60 (적서동 새마을회관)	-
	A-3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문수로1499번길 85-2 (간호전문 요양원)	-
	A-4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반구로324번길 90 (권선경로당)	-
	A-5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장수로196번길 105-9 (반구2리 마을회관)	-
	A-6	경상북도 영주시 한정로124번길 344-1 (서릿골공동거주의집)	-
	A-7	경북 영주시 문정동 62-4 (한정경로당)	-
악 취	O-1	경상북도 영주시 적서로261번길 65 (아천경로당)	-
	O-2	경상북도 영주시 적서로 351-60 (적서동 새마을회관)	-
	O-3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문수로1499번길 85-2 (간호전문 요양원)	-
	O-4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반구로324번길 90 (권선경로당)	-
	O-5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장수로196번길 105-9 (반구2리 마을회관)	-
	O-6	경상북도 영주시 한정로124번길 344-1 (서릿골공동거주의집)	-
	O-7	경북 영주시 문정동 62-4 (한정경로당)	-

주) 조사지점은 현지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표 2.1.4-3 계속〉 항목별 조사지점 선정

항 목	조사지점		비고
지표수질	W-1	경북 영주시 적서동 816-1 (적서교 하부)	서천
	W-2	경북 영주시 적서동 27-3	서천
	W-3	경북 영주시 적서동 530-3	서천
	W-4	경북 영주시 적서동 503	서천
	W-5	경북 영주시 문수면 권선리 782	-
지하수질	GW-1	경상북도 영주시 적서로261번길 65 (아천경로당)	-
	GW-2	경북 영주시 적서동 606	-
	GW-3	경상북도 영주시 적서로261번길 5	-
토 양	S-1	경북 영주시 적서동 704-3	-
	S-2	경북 영주시 적서동 619	-
	S-3	경북 영주시 적서동 543	-
소음·진동	N·V-1	경상북도 영주시 적서로261번길 65 (아천경로당)	도로변지역
	N·V-2	경상북도 영주시 적서로261번길 16	도로변지역
	N·V-3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문수로1499번길 126	도로변지역
	N·V-4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반구로 289-18	도로변지역
	N·V-5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적서로205번길 68 (연화산옹석사)	도로변지역
	N·V-6	경상북도 영주시 한정로124번길 207-19	도로변지역
	N·V-7	경북 영주시 적서공단로 126	도로변지역
위생· 공중보건	H-1	경상북도 영주시 적서로261번길 65 (아천경로당)	-
	H-2	경상북도 영주시 적서로 351-60 (적서동 새마을회관)	-
	H-3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문수로1499번길 85-2 (간호전문 요양원)	-
	H-4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반구로324번길 90 (권선경로당)	-
	H-5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장수로196번길 105-9 (반구2리 마을회관)	-
	H-6	경상북도 영주시 한정로124번길 344-1 (서릿골공동거주의집)	-
	H-7	경북 영주시 문정동 62-4 (한정경로당)	-

주) 조사지점은 현지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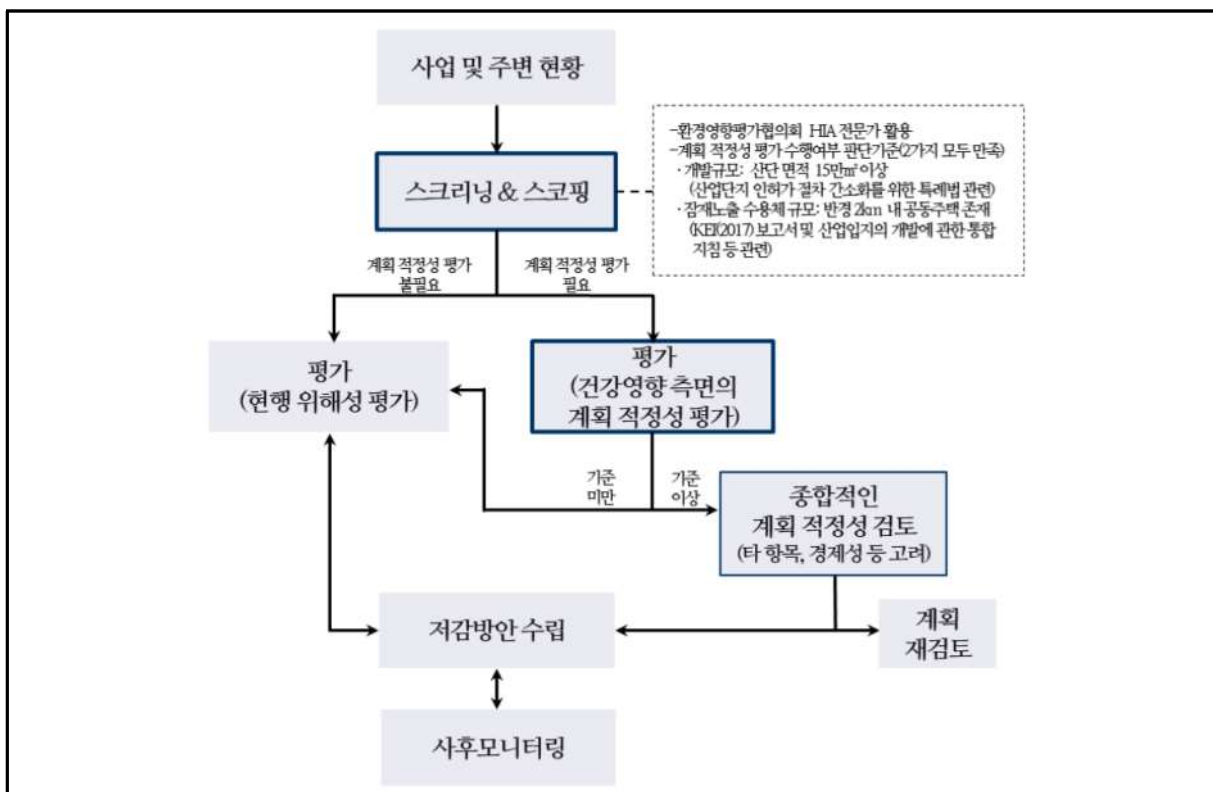
(그림 2.1.4-2) 환경질 조사지점도

2.1.5 건강영향 항목의 적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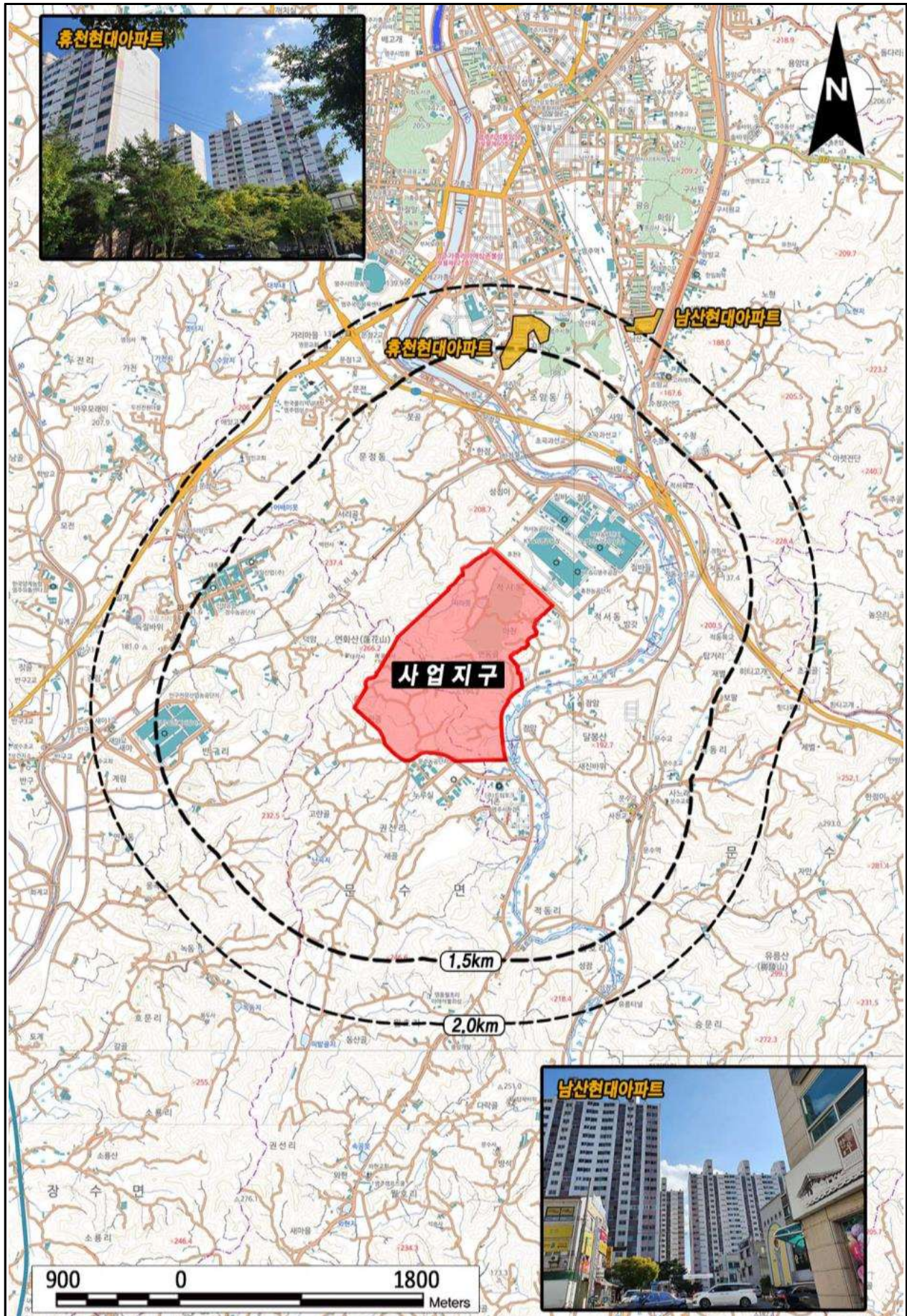
-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를 위해 평가항목,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하는 행위로서 국내의 환경영향평가 내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의 경우, 「환경보건법」 시행령[별표1]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 단,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한하여 건강영향을 고려한 계획 적정성 평가 수행 여부를 개발 규모 및 주변 지역사회 잠재노출 인구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함
 - 본 사업지구 개발규모는 1,362,801㎡로 15만㎡ 이상에 해당됨
 - 반경 1.5km 내 공동주택(휴천현대아파트)이 존재함

〈표 2.1.5-1〉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사업(「환경보건법」시행령 [별표1])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1.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서 개발면적이 15만㎡ 이상인 사업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사업으로서 조성면적이 15만㎡ 이상인 사업. 다만, 가목에 해당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림 2.1.5-1)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계획 적정성



(그림 2.1.5-2) 반경 2km 이내의 공동주택 현황

2.1.5 주민의견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본 사업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환경영향평가(초안) 단계에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의거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 공고·홍보 계획((안) : 현수막 부착, 마을이장을 통한 홍보, 마을방송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토록 할 계획임
- 평가서 초안 공고(「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 중앙 및 지방일간지 신문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 이후 3일 (근무일 기준) 이내에 공고(합동설명회 개최내용 포함)
- 평가서 초안 열람(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경상북도 영주시 정보통신망 : 공고 및 공람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 공고 및 공람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초안)
 - 공람장소 열람 : 영주시에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요약서 등을 함께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함
-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 개최(「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시행령 제7조)
 - 공고일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를 개최(설명회 장소는 영주시와 추후 협의하여 결정)